

# 화성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11. 2. 이계철의원 외 10명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11. 3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7차 기획행정위원회(2023. 12. 6. 상정, 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이계철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사유지 내 도로, 상·하수도, 전기, 통신, 가스, 지역난방, 송유관 및 부속시설물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제출받은 ‘사용승낙서’를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문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사유지에 관한 정의 신설 (안 제2조제7호)
- 사용승낙서 전자문서 관리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8조의2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윤정자)

-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른 예기치 못한 상황을 사전에 대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화성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11. 2. 화성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11. 3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7차 기획행정위원회(2023. 12. 6. 상정, 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정책기획과 유운호)

### 가. 제안이유

- 공공기관 중요사항의 변경 검토 시, 기존의 주무부서 협의절차에 총괄부서 협의절차를 추가함으로써 공공기관 경영체계의 통일성과 시정운영의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- “주무부서의 장” 용어 정의를 변경(안 제2조제3호).
- “총괄부서의 장” 용어 정의를 신설(안 제2조제4호 신설).
- 공공기관 중요사항의 변경 시,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한 기존의 규정에 주무부서의 장이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는 절차를 신설(안 제11조제3항).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윤정자)
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,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는 조직, 인사 예산 등 중요사항을 조정하는 역할은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.

다만, 재단별 다양한 성격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고유 목적에 맞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생략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화성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11. 2. 김영수의원 외 6명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11. 3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7차 기획행정위원회(2023. 12. 6. 상정, 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김영수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화성시 거주자가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자 또는 가족에 대하여 장례비, 치료비, 상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죄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화성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정의 및 적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2조)
- 시장의 책무 및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~제4조)
- 범죄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)
- 홍보·교육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~제7조)
-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 (안 제8조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윤정자)

-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, 범죄피해자가 직면하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